

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 관
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
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. 25.

발 의 자 : 한기호 · 이양수 · 태영호
이철규 · 유의동 · 김성원
백종헌 · 성일중 · 김도읍
홍준표 · 김석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무주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음.

그런데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의 대상 지역에 수복지구를 포함하는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, 이와 충돌하는 현행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의안번호 제145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 관 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

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 관한特別措置法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 관한特別
措置法”을 “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
에 관한 특별조치법”으로 한다.

제20조 앞의 “제5장 補則”을 삭제하고,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
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補則

제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 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 관한特 別措置法</u> <u>第5章 補則</u> <u>第20條(無申告土地등의 國有化)</u> ① 1991年 12月 31日까지 管轄 所管廳에 所有者復舊登錄을 申 請하지 아니하거나(제5조에 따 른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 한 경우를 포함한다) 申請이 取下된 所有者未復舊土地 및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 決定에 의하여 申請이 棄却된 所有者未復舊土地는 이 法의 有效期間滿了후(附則 第2項 但 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 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) 無主의 土地로 보아 國有財産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有 財産으로 取得하되, 「국유재산 법」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 고 취득한 날부터 매각처분할	<u>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 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
취득한 토지는 「국유재산법」
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
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
수 있다. 이 경우 토지의 매각
범위, 매각허용 대상자, 대금의
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
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
<신 설>

第5章 補則